

필수실무관 지정 증서

(제26조제3항 관련)

제 호

증 서

× × 과

5급(행정사무관)대우 △△△

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○ ○ ○ 장 관

직인